

창의융합 경력개발 학점제 운영 규정

- 제정 : 2020. 3. 13.
- 개정 : 2020. 7. 1.
- 개정 : 2020. 9. 1.
- 개정 : 2022. 6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5조의 3에 따라 학생의 경력개발과 진로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고, 도전의식 고취와 창의융합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융합 경력개발 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목개설 및 수강신청) ① 창의융합 경력개발 프로그램은 학생, 교수, 행정부서가 설계할 수 있으며 학생은 자신이나 교수, 행정부서가 설계한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참여한다.

② 프로그램은 과목명은 '창의융합프로젝트'로, 이수구분은 전공일반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③ 과목은 매학기 개설할 수 있으며 전공과목 개설학점과 무관하게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.

④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1학년 2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 중이어야 한다.

⑤ '창의융합프로젝트' 과목 수강신청은 학기당 2학점으로 한다.

⑥ '창의융합프로젝트' 과목의 수강신청 학점은 학생의 수강신청 최대/최소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3조 (운영절차) ① 취창업지원과에서는 매학기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공고한다.

② 참가신청은 개인 혹은 팀 단위로 가능하다.

③ 희망자는 프로그램의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와 학생의 소속학과 학과장의 승인을 받는다.

④ 신청서는 취창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대상 프로그램(과제)를 선정한다.

⑤ 선정된 프로그램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⑥ 과제수행 평가자는 지도교수로 하며 평가가 끝나면 학생의 소속학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취창업지원과에 제출한다.

⑦ 과제수행 평가 결과는 취창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.

제4조 (지도교수) ① 학생은 희망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지도교수를 선정한다. 이때, 과제의 특성에 따라 타학과 지도교수도 선정이 가능하다. 학과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지도교수를 지

5-0-24 창의융합 경력개발 학점제 운영 지침

정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와 자문, 목표달성을 위한 지도, 학생의 수행 성과 평가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③ 지도교수에게 지급하는 지도비는 별도로 정한다.

제5조 (학점인정기준) ① '창의융합 프로젝트'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학점당 15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.

2. 활동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등 제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의 제출과 평가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.

3. 수행과제는 성과발표회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.

제6조 (신청절차) ① '창의융합 프로젝트'교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신청기간에 본교에서 정한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취·창업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교무과에 과목개설을 요청한다.

제7조 (성적평가) ① 학생은 학기종료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는 지도교수가 수행한다.

② 평가기준은 출석평가(20%), 중간평가(40%), 최종평가(40%)로 한다.

③ 성적은 등급제(A⁺~F)로 부여하며 성적평가 방식은 절대평가로 한다.

④ 전공일반 과목으로 인정한다.

제8조(학점부여) 과목당 학점은 2학점까지 인정하며 프로그램 참여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